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07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현 · 문대림
김용민 · 한병도 · 서영석
소병훈 · 이성윤 · 강준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재혼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특례)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p>1. (생략)</p> <p>2. <u>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40조의2(재혼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특례) ① 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u></p>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